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일부개정 2021. 9. 13. 규정 제860호

1. 개정이유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따른 대학원 조직 반영
-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특수대학원 무논문신청 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조항 신설하고, 기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 변경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2항제1호~3호, 제9조제2항)
 -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 특수대학원
- 공동논문지도교수 자격 문구 정비 및 신설(안 제4조제4항)
 - 공동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거쳐 대학원장 승인으로 조문 변경
 -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신설
- 특수대학원 무논문 신청 후 한차례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
-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5조제3항)
 - 정년을 정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 기타 조문 문구 정비
 - 논문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본교 스포츠사이언스지에를 논문 등재지(후보지 포함)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을 정규등록에서 대학원 정규등록으로 변경 (안 제10조 제1항)
 - 박사학위 후드의 내부 안감색(카민레드) 삭제(안 별표 1)

- 별표 1, 별표 2에 특수대학원 신설 전공 추가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현실에 맞게 문구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고)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붙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를 “한국체육대학교”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학기에” 를 “학기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고 한다)의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은 대학원별 각 3명, 총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 지도원생이 1명일 경우 석사 10명, 박사 지도원생이 없을 경우 석사 11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을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을 “특수대학원”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신청 후 변경은 수료 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도교수가 정년에 해당하는” 를 “지도교수의 정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학원” 을 “일반대학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원” 을 “일반대학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을 “특수대학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1. 박사과정 중 책임연구자(교신연구자 포함)로서 100% 이상 연구논문 게재(예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인 연구논문 : 100%

나. 2인 연구논문 : 70%

다. 3인 연구논문 : 50%

라. 4인 이상 연구논문 : 30%

2. 박사과정 중 책임연구자(교신연구자 포함)로서 지도교수와 2인이 공동 연구한 논문 게재(예정) 실적

제9조제2항 중 “대학원은” 을 “일반대학원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규등록” 을 “대학원 정규등록” 으로 한다.

부 칙(제858호, 2021.9.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위종류	학위종별	해당학과(부)	후드색
학사학위	체육학학사	체육학과,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전공) 사회체육학부(사회체육전공, 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건강복지학부(레저스포츠전공, 건강관리 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노인체육복지전공) 무용학과, 생활무용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태권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검정
석사학위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생활체육전공, 건강관리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글로벌스포츠리더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스포츠경기심판전공, 스포츠안전관리전공, 스포츠AI·빅데이터전공, 스포츠공학전공	초록
	교육학석사	학교체육교육전공	청색
박사학위	이학박사	건강교육학전공, 운동생리학전공, 스포츠심리학전공, 운동역학전공, 스포츠교육학전공, 체육사학전공, 스포츠사회학전공, 체육철학전공, 체육측정평가학전공, 특수체육학전공, 스포츠산업·경영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스포츠코칭전공	노랑

* 박사학위 후드의 V선은 **흰색**, 소매의 삼단은 검정색(금색테두리 등 금지)으로 함.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어시험 합격 평가 및 합격기준

구분	시 험 종 류	주 관	합 격 기 준(등급/점수)
석사과정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입학고사 성적 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 재학 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와 제10조 제5항 이수확인서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석제 호

학 위 기(석사)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제 호

학 위 기(석사)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u>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한국체육대학교</u> ----- ----- -----.</p>
<p>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삭 제</p> <p>2. 석사과정은 둘째 <u>학기에</u>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다만, 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첫째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p> <p>3. (생 략)</p> <p>② (생 략)</p> <p>③ 논문지도교수가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담당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p> <p><u>1. 대학원 5명(박사 2명, 석사 3명),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각 3명, 총 11명 이내로 한다. 단, 박사 지도원생이 1인일 경우 석사 10명, 박사 지도원생이 없을 경우 석사 11명 이내로 한다.</u></p> <p>2. · 3. (생 략)</p> <p>④ 박사학위과정 원생은 박사과정 둘째 학기에 <u>공동 논문지도교수</u>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 -----.</p> <p>1. 삭 제</p> <p>2. ----- <u>학기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고 한다)의</u>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u>1.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은 대학원별 각 3명, 총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 지도원생이 1명일 경우 석사 10명, 박사 지도원생이 없을 경우 석사 11명 이내로 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 <u>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 논문지도교수</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u></p>
<p>제4조의2(석사학위 무논문 신청) <u>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u>의 무논문 선택과정을 이수하려는 원생은 2차 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u><신 설></u></p>	<p>제4조의2(석사학위 무논문 신청) ① 특수대학원----- ----- -----.</p> <p><u>②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신청 후 변경은 수료 전 한 차례로 한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② (생략) ③ <u>지도교수가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u></p>	<p>제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도교수의 정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u> <u>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u> -----.</p>
<p>제6조(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자격) ① 논문 연구계획서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학원</u> 석사과정 1학기 이상 2. <u>대학원</u> 박사과정 3학기 이상 3. <u>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u> 석사과정 2학기 이상 <p>② <u>박사과정의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은 재학 중에 책임연구자(교신저자 포함)로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을 한국학술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본교 스포츠사이언스지에 70% 이상의 게재실적(게재예정)이나 2편 이상의 논문게재(게재예정)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게재 실적비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 논문 : 100% 2. 2명 논문 : 70% 3. 3명 논문 : 50% 4. 4명 이상 : 30% <p>③ (생략)</p>	<p>제6조(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자격)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일반대학원</u> ----- 2. <u>일반대학원</u> ----- 3. <u>특수대학원</u> ----- <p>② <u>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예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사과정 중 책임연구자(교신연구자 포함)로서 <u>100% 이상 연구논문 게재(예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인 연구논문 : 100% 나. 2인 연구논문 : 70% 다. 3인 연구논문 : 50% 라. 4인 이상 연구논문 : 30% 2. 박사과정 중 책임연구자(교신연구자 포함)로서 <u>지도교수와 2인이 공동 연구한 논문 게재(예정) 실적</u>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삭제 ②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 24학점(전공 12학점을 포함하되, <u>대학원은</u> 연구법 6학점,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공 14학점과 교직교과 4학점 포함)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 ~ ⑥ (생략)</p>	<p>제9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삭제 ② ----- -----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u>정규등록</u>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로 필답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10조(외국어시험) ① ----- ----- <u>대학원 정규등록</u>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부 칙(제858호, 2021.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종류	학위종별	해당학과(부)	후드색
학사학위	체육학사	(생략)	검정
석사학위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생활체육전공, 건강관리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글로벌스포츠리더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초록
	교육학석사	(생략)	청색
박사학위	이학박사	(생략)	노랑

* 박사학위 후드의 V선은 흰색, 내부 안감색은 교색(카민레드), 소매의 삼단은 검정색(금색테두리 등 금지)으로 함.

[별표 1]

학위종류	학위종별	해당학과(부)	후드색
학사학위	체육학사	(현행과 같음)	검정
석사학위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생활체육전공, 건강관리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글로벌스포츠리더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u>스포츠경기심판전공</u> , <u>스포츠안전관리전공</u> , <u>스포츠 AI·빅데이터전공</u> , <u>스포츠공학전공</u>	초록
	교육학석사	(현행과 같음)	청색
박사학위	이학박사	(현행과 같음)	노랑

* 박사학위 후드의 V선은 흰색, 소매의 삼단은 검정색(금색테두리 등 금지)으로 함.

[별표 2]

외국어시험 합격 평가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종류	주관	합격기준(등급/점수)
석사과정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60%이상 취득
박사과정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 (입학고사 성적 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70%이상 취득

* 재학 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별표 2]

외국어시험 합격 평가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종류	주관	합격기준(등급/점수)
석사과정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60%이상 취득
박사과정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 (입학고사 성적 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70%이상 취득

* 재학 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와 제10조 제5항 이수확인서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석제 호		석제 호		
학 위 기(석사)		학 위 기(석사)		
성 명 () ()년 ()월 ()일생		성 명 () ()년 ()월 ()일생		
<u>위 사람은 본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u>		<u>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u>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학위번호 :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석제 호		석제 호		
학 위 기(석사)		학 위 기(석사)		
성 명 () ()년 ()월 ()일생		성 명 () ()년 ()월 ()일생		
<u>위 사람은 본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u>		<u>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u>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학위번호 :		